

바. 공시송달 내역(위법건축물 개요)

연번	법정동	소재지	건축주	기본주소	상세주소	면적	부과 금액	위반내역
1	신림동	519-**-	김*화	서울특별시 관악구	조원로**길 **	25	695,620	2023수시(4월), 패널, 근린생활시설, 3층, 30㎡이하(1년)
2	신림동	1648-**-	이*순	서울특별시 관악구	조원로**길 **	65	273,000	2023수시(4월), 조립식패널, 단독주택, 옥상, 지분 0.4, 소유자변경(1년)
3	봉천동	1575-**-	김*무	서울특별시 관악구	청룡**길 **	2	93,100	2023수시(4월), 조립식패널, 다가구주택, 1층, 30㎡이하(1년)

※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,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
**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-885호
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
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6.23.)로 결정고시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공고합니다. 상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공람공고는, 당초 정비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나,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 매뉴얼(2022년)에 따라

정비사업의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. 해당 정비공사는 2017년에 완료되었습니다.

2023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공람기간: 2023.04.26. ~ 2023.05.10.
2. 공람장소: 관악구청 도시재생과(☎02-879-6461)
3. 공람내용: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계도서
4. 사업시행계획안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정비사업의 종류: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
- 2) 정비사업의 명칭: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	관악구 호암로 18길 일대	42,715	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시행자: 관악구청장

2) 주 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(봉천동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2016. 6. 23.(구역지정고시일)
~ 2023. 5. 24.(사업시행계획 및 공사완료 고시일)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해당없음

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- ① 구역 내 건축물 신림동 306-12, 306-100 주택을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
 ② 그 외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

량비용 용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

2) 신설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층수(층)	비고
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					
신설	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	42,715	주택용지	32,651	신림동 306-27외 145필지	주택 및 근린생활	관계 법령에 따름	관계 법령에 따름	관계 법령에 따름	-
			공동 이용시설	298	신림동 306-12, 306-100	공동이용 시설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설비율			-							
심의완화 사항			-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관련법령에 따름							

3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공동이용시설	신림동 306-12 외1	-	298.0	298.0	마을회관 등

사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: 해당없음
 아. 법 제97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

5.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공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

내 관악구청 도시재생과(☎ 02-879-6761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정비구역 결정도 1부.
 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 1] 정비구역 결정도



〔붙임2〕 의견서 서식(예시)

공 램 의 견 서

사 업 명				
공람기간				
대 상	토지 :			
물 건 지	건물 :			
의 견 제 출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			
	주 소			
내 용				